『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서울시에서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"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"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.

현행 조례의 부칙으로 규정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존

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 강화를 위하여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